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924
- 발 의 자 : 박호근 의원(찬성자 29명)
- 발 의 일 : 2017년 6월 30일
- 회 부 일 : 2017년 7월 24일

2. 제안이유

- 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치구 공유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 함(제7조).
- 나. 새로운 공유모델 발굴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제9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2017.7.7.~2017.7.1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제7조제2항 신설),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안제9조의 2)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2012년 12월 동 조례 제정 이후 공유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자치구 공유촉진 공모사업”과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민간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참고 1 참조).
- 현재, 공유단체 또는 기업으로 지정된 단체 등은 74개이며, 최근 3년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2015년 14개, 2016년 18개, 2017년 9개 (8월 기준))과 같음.

〈최근 3년간 공유기업 지정 현황〉

연도	연번	단체(기업)명	공유내용	비고
2017 년	1	(주)데이그래피	인테리어 벽화 플랫폼 구축하여 청년 예술가와 자영업자를 연결(재능공유), 신촌기차역 앞 청년커뮤니티 공간 공유	
	2	(주)에스폼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각종 문서서식 공유	
	3	쉐어잇(주)	학교 미사용 시간대 생활체육인이 학교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	
	4	(주)두꺼비하우징	빈 주택을 리모델링후 쉐어하우스로 활용 등	
	5	아트립	서울내 공유숙박지를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및 페어공간으로 활용	
	6	(주)프렌트립	소셜 액티비티 공유 플랫폼 '프립'을 활용하여 사람과 장소를 연결	
	7	(주)한국주차공유서비스	주택 및 건물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공간을 공유	
	8	꿈꾸는 다락방	벼룩시장을 활용한 물품 및 보드게임 공유, 은평대학을 통한 재능 및 교육프로그램 공유	
	9	파릇한 절문이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텃밭을 조성하고 생산물 등을 공유	
2016 년	1	리베라빗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가구와 생활용품을 공유	
	2	어픽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용품을 공유	
	3	아이랑 놀기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전문가와 초보엄마를 연결	
	4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도시민박업주와 외국인관광객을 연결	
	5	선렵건축사사무소	빈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유	

	6	원바이트	셰어하우스 공간 공급자와 수요자 연결	
	7	세븐픽처스	예술작가와 카페를 연결하여 전시회 개최	
	8	동네발전소협동조합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카페, 음식점, 회의장 등 공유	
	9	지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대체숙박업 등 공유	
	10	라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아이용품 등 중고물품 대여 중개	
	11	루아흐	코워킹 공간을 창업가, 예비창업가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	
	12	플래니토니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학교재를 학생 간 공유	
	13	히든북	공원, 광장 등 유휴공간 활용하여 돛자리 도서관 개최	
	14	다날쏘시오	각종 생활용품 개인간 대여 서비스	
	15	허밍비	시니어의 재능공유를 통해 상품 판매 및 소셜다이닝 추진	
	16	팀스퀘어	비즈니스 기회, 프로젝트 기회 등 연결	
	17	씨엘인포넷	아이아웃, 아이책 등 아이용품 직거래 사이트 운영	
	18	대안영사문화발전소 아이공	대안 예술가 들을 위한 미디어아트 공간 공유 및 영상 콘텐츠 공유	
2015 년	1	홍합밸리	공간 및 아이디어 교류의 장 제공	
	2	상상우리	코워킹 공간, (예비)은퇴자들 멘토링	
	3	리싸이클씨티	재활용 예술작가들에게 재활용품, 작품활동 공간 공유	
	4	오투잡	디자인, 번역, 상담 등 개인의 재능 공유	
	5	꿈꾸는 도토리	육아 관련 물품, 도서 공유	
	6	버스킹티비	공연시설 개방	
	7	달려라 피아노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 기증받아 복지시설 등에 재기증	
	8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들과 문자공유를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유	
	9	씨네에그	영화와 공간을 연결하여 정보공유	
	10	이노온	주차장 공유	
	11	헤드플로	오픈칼리지를 통한 공간 및 재능공유	
	12	엑스비전 테크놀러지	시각장애인과 도서 공유	
	13	링고플라이	전세계인들이 참여하는 모국어 재능 공유	
	14	재능넷	디자인, 번역, 상담 등 개인의 재능 공유	

가. 자치구의 공유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 안 제7조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자치구와의 협력)</u></p> <p>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u>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u></p> <p>①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은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는 동법을 근거로 하여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조례에는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p><u>제23조(보조금의 교부)</u>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②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u> <개정 2014.5.2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p>

- 다만, 지원범위를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 내용이 불명확한바, 불필요한 지원의 요구 및 확대 여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명확화 (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제2항은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바,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우수 공유 참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u>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서울혁신기획관은 2014년 1월 동 조례 제9조의2의 신설이후에 한 번도 우수 공유 참여자를 지정한 바가 없다는 점, 둘째, ‘우수 공유 참여자’라는 개념이 불분명한 점, 셋째, 동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우수 공유 참여자로 지정이 되어도 동일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점, 넷째,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마치 사업비가 아닌 포상금의 성격은 아닌지 불분명한 점, 다섯째, 법령상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 자료 1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민간 공모사업)

〈최근 5년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현황〉

- 2013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공모결과 : 120건
 - 심사결과 : 37개 지정, 19개 사업비 지원(286백만원)
 - 2014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공모결과 : 84건
 - 심사결과 : 13개 지정, 18개 사업비 지원(218백만원)
 - 2015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공모결과 : 58건
 - 심사결과 : 14개 지정, 14개 사업비 지원(232백만원)
 - 2016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공모결과 : 124건
 - 심사결과 : 43개 지정, 24개 사업비 지원(280백만원)
 - 2017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8월 기준)
 - 공모결과 : 44건
 - 심사결과 : 9개 지정, 15개 사업비 지원(192백만원)
- ⇒ 총116개 공유단체기업 지정, 90개 사업, 1,208백만원 사업비 지원

〈최근 3년간 연도별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단체 현황〉

□ '17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단체(기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192,610
1	아트립	아트스테이, 하우스갤러리 페어 사업	10,000
2	(주)프렌트립	소셜액티비티 운동지기 모집사업	10,000
3	(주)한국주차공유서비스	주차공유서비스 소개 및 홍보물 배포	15,000
4	꿈꾸는 다락방	보드게임 공유를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10,000

5	공독	공유독서실 운영방법 안내책자 발송 및 설명회 개최	15,000
6	버스킹티비	버스킹존 확대 및 활성화 사업	15,000
7	씨엘인포넷	베이비 키즈페어 참가, 온·오프라인 공유릴레이	20,000
8	어픽스	온라인 마케팅	10,000
9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문자통역사의 재능과 실시간 자막공유플랫폼 홍보·마케팅	15,000
10	허밍비	시니어 재능 브랜드 개발사업, 안드로이드 앱 개발	10,000
11	외국인도시민박업협회	공유숙박(게스트하우스) 설명회 및 홍보	15,000
12	꿈꾸는 도토리	마을웃장 및 마을책방 사업비	2,610
13	조인어스코리아	외국인 한복체험공유 행사	10,000

□ '16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단체(기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279,600
1	아이랑놀기짱	경력단절 여성과 초보맘을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서비스	10,000
2	외국인관광도시 민박협회	게스트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5,000
3	선렵건축사사무소	공유공간 사용자수요조사 및 관리매뉴얼 구축	8,000
4	세븐픽처스	전시 공간 확보 사업 및 세븐픽처스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	5,000
5	코드	공유허브 운영 등	70,000
6	코자자	서울시 숙박공유 활성화를 위한 그로스해킹 마케팅	10,000
7	재능넷	재능공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서비스	8,000
8	버스킹tv	거리공연 장소(버스킹존)공유 플랫폼	10,000
9	상상우리	중장년층의 신직업에 대한 정보공유	8,000
10	루아흐	인맥티켓(코워킹공간 활성화를 위함)	8,000
11	히든북	dotzari 도서관 운영	10,000

12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스마트쉐어글래스 운영 홍보 등	12,000
13	한국데이터하우스	공유공간 사용자수요조사 및 관리매뉴얼 구축	8,000
14	집밥	소셜다이닝 홍보	10,000
15	은평e품앗이	30만을 사로잡는 청바지 공유	10,000
16	팀스퀘어	청년인턴지원사업	1,800
17	씨엘인포넷	공유문화 확산 캠페인	15,000
18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영상물 디지털화 및 작품전시 업무, 청년인턴(작품전시)	16,800
19	에스엔지유나이티드	청년인턴(외국인 고객관리 지원)	1,800
20	세어하우스 우주	세어하우스 동영상 제작 및 홍보	13,000
21	리베라빗	청년인턴(고객상담업무)	1,800
22	플레이플래닛	호스트교육 및 커뮤니티 조성	13,000
23	조인어스코리아	한복공유체험	10,000
24	홍합밸리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공유경제 나눔 이야기 시리즈	14,400

□ '15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단체(기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232,000
1	달려라피아노	피아노를 기증받아 복지시설, 공원 등에 재기증	6,000
2	위시켓	프로그래머, 디자이너와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개인 연결	8,000
3	코자자	빈 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 줄 수 있도록 연결	10,000
4	자락당	가끔 쓰는 물건을 사람들이 서로 빌리고 빌려줄 수 있도록 연결	10,000

5	플레이플래닛	여행객과 여행지를 잘 아는 현지인을 연결하여 여행지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10,000
6	큐리어슬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재능, 지식 동영상 공유하도록 연결	10,000
7	CCK	공유 온라인 매거진이자 참여플랫폼 공유허브 운영 자발적 공유 표시방식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보급운동 등 지식공유 활동 추진	70,000
8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들과 문자공유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유	26,500
9	씨네에그	영화와 공간을 연결하여 정보공유	9,000
10	이노온	주차장 공유	23,000
11	헤드플로	오픈칼리지를 통한 공간 및 재능 공유	8,000
12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시각장애인과 도서 공유	25,000
13	링고플라이	전세계인들이 참여하는 모국어 재능 공유	10,500
14	상상우리	코워킹 공간 공유, (예비)은퇴자들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6,000